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29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 : 합헌

김영수 변호사

1.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6(합헌) :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후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7(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친일재산을 그 취득 원인 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 제3조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일합방의 공으로 받은 작위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후단, 위의 작위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의 규명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후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한일합방의 공으로 받은 작위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입증책임의 분배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오래전에 취득된 친일재산의 취득경위를 국가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반면 재산의 취득자측은 취득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친일재산 추정 규정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바, 친일재산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과 우리 헌법 전문의 내용에 비추어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재산귀속의 대상을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얼마든지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규정이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친일재산은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과 그 극복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재산권' 조항으로써 보호될 수 없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별개의견,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1912년경 일제의 토지사정부 작성에 의해 그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추정조항 중 '취득'에 '사정에 의한 취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한정위헌의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강국의 일부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

2. [다운로드](#) : [2009헌바292 선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등 위헌소원](#)